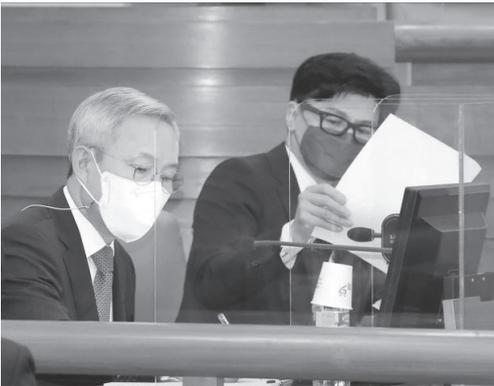




## 한동훈의 ‘검수완박’ 법정 발언, 죄가 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 강 일원 前 헌법재판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 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에 출석해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현재 심판정 발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날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나온 한 장관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

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다음날 취재진에 ‘법정 변론에서 한 말은 모두 사실’이라며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한 변론에 대해 재판의 상대방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박 원내대표가) 무고죄가 된다 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좀 치졸한 얘기일 것 같다.”며 ‘무고죄’도 거론했습니다.

사실 소송행위 내용의 상당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잘못을 집어 내는 반면 변호인은 ‘피해자 탓’을 합니다. 민사 소송도 마찬가지로 원고는 피고를, 피고는 원고를 헐뜯고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은 좀

처럼 없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행위로 면책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20조는 ‘정당행위’라는 표제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견 죄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법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몇 가지로 유형화한 것으로 그 중 하나가 ‘업무로 인한 행위’입니다. 대표적으로 검사의 구형, 변호사의 법정 변론이 해당합니다. 한 장관의 ‘검수완박’ 법정 발언 또한 검사들과 함께 국회를 상대로 현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소송 당사자로서의 발언인 만큼 ‘업무로 인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실제 영미법계에서는 관례를 통해 다음의 사항들을 명예훼손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적 면책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① 사법절차에서 행해진 법관, 변호사, 검사, 법원 직원, 당사자 등이 그 절차와 관련해 행한 진술 ② 행정부 최고위급 공무원이나 기관장이 직무와 관련해 행한 발언 ③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행한 국회의원의 발언이 그것입니다.

절대적 면책특권이란 해당 절차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표현 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면하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례에 대입하자면 실사 한 장관 발언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니더라도 법정의 소송 행위라는 형식을 갖춘 이상 면책된

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한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무고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헌법상 명문으로 면책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사, 변호인 등 사법절차 내에서의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형법의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박용상, ‘영미 명예훼손법’).

“피고인은 잔인한 수법으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자발찌를 채운 국가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인면수심의 범행을 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

10년전, 서울 중곡동에서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범인에 대한 검사의 구형 내용입니다. 만일 면책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이 ‘인면수심’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는다.” 등의 표현을 일일이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책임의 부담 때문에 형사절차, 나아가 국가의 사법절차 전반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책규정과 관련 법리는 이런 상황을 막아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출처/조선일보)